



-202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24회계연도분)



목 차

1. 사하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3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실)	9
3.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14
4.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정비과)	20
5. 식품진흥기금(환경위생과)	26
6. 자활기금(생활보장과)	32
7.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복지과)	37
8. 양성평등기금(가족행복과)	42
9. 고향사랑기금(총무과)	48
10.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체육홍보과)	53
11.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재무과)	59

사하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1 총 평

- 사하구 기금 운용은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으로,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을 살펴보면 사하구 기금은 사업비 편성 비율이 27.79%, 사업비 집행률이 91.66%로,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지출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금 운용 건전성 측면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 비율을 1/2 이상으로 유지하여, 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음. 또한,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0.55%로 기금의 운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우리 구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합계정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 회계 및 기금 간의 예수·예탁 등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가 높음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구는 총 10개(법정기금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기타 4)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기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지표별 분석결과

< 사하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기금 수입·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 비율 (%)	
			분리운용 여부 (O/X/△)	잉여금 적립수준 (%)	예치금 예탁금 비중 (%)					수입	지출
사하구	27.79	91.66	○	0	50	100	0	0.55	4	100	100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평가대상인 8개 기금의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계획된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비율은 평균 27.79%로 23회계연도 18.84% 대비 8.95%p 높게 편성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사하구	(평균)	2,374	8,544	27.79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198	198	10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77	484	36.57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765	5,578	31.64
	식품진흥기금	95	333	28.53
	고향사랑기금	27	123	21.95
	자활기금	91	1,312	6.94
	양성평등기금	7	141	4.96
	노인복지기금	14	375	3.73

② 사업비 집행률

- 평가대상 8개 기금의 평균 사업비 지출액은 91.66%로 기금사업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사하구	(평균)	2,176	2,374	91.66
	노인복지기금	14	14	100.00
	양성평등기금	7	7	100.00
	고향사랑기금	27	27	100.00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691	1,765	95.81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182	198	91.92
	식품진흥기금	83	95	87.37
	옥외광고 발전기금	134	177	75.71
	자활기금	38	91	41.76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분리운용 여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적립액 (A)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B)	순세계 잉여금 중 지방채 상환 금액 (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체 기금 예치금 (F)	적립수준 (A/(B-C) ×100)	예치금 및 예탁금 비중 (D+E)/F ×100)
					예치금 (D)	예탁금 (E)			
사하구	○	0	13,639	0	236	4,000	8,557	0.00	49.50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사하구	(평균)					1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Y	Y	Y	Y	100.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Y	Y	Y	Y	100.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00
	자활기금	Y	Y	Y	Y	100.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0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00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Y	Y	Y	Y	100.00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Y	Y	Y	Y	100.00

⑤ 타회계 의존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사하구	(계)	0	213	0.00
	노인복지기금	0	27	0.00
	양성평등기금	0	15	0.00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0	171	0.00

⑥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사하구	946,544	15,662	6,252	0	4,236	5,174	0.55

⑦ 기금 수 현황

(단위: 개수)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사하구	10	5	0	1	0	4

⑧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의 적정성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기금 수입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②번 (기금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사하구	(평균)	100%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Y	Y
	재난관리기금	Y	Y
	옥외광고 발전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자활기금	Y	Y
	노인복지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Y	Y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Y	Y

⑨ 가·감점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계획

<사하구>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이행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이상 기금이 있는 감정 대상 지자체는 불필요한 경비의 삭감 등 세출 부문의 구조조정 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	X	22회계연도 (31.91%) → 23,24회계연도 (0%)	24,25회계연도 (0%)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사하구	계	0	2,714	0.00
	재난관리기금	0	535	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0	134	0.00
	식품진흥기금	0	83	0.00
	자활기금	0	38	0.00
	노인복지기금	0	14	0.00
	양성평등기금	0	7	0.00
	고향사랑기금	0	27	0.00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0	185	0.00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0	1,691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 설치연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31	418	213	205	4,236	2,912	333	2,579	

II.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4개의 기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4,330백만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하였으며, 24. 12. 24. 4,000백만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였음
-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하는 창구로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 재원 운용을 위해 존치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없음.)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없음.)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긴급한 재정수요 대비를 위해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 사업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타 회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용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4,330백만원을 예수금으로 조성하여 이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자 21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유재원 4,000백만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예수금이자상환 (*재무활동)	333백만원	○ 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거나 전출 하여 활용 ○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 불가	상
② 일반회계 예탁금 (*재무활동)	2,550백만원		
합 계	2,883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
- 조 성 액 : 4,236백만원('24년 12월말 기준)
- 조성재원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융자금 상환액, 이자 수입금 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조성된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금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할 계획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 및 융자 대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4,337	100%	4,287	100%	4,449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4,042	93.2%				
	예치금회수	85	2.0%	4,191	97.8%	4,031	90.6%
	예수금	61	1.4%	55	1.3%	87	2.0%
	이자수입	149	3.4%	41	0.9%	331	7.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337	100%	4,287	100%	4,449	100%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4,000	89.9%
	예치금	4,191	96.6%	4,031	94.0%	236	5.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146	3.4%	256	6.0%	213	4.8%
	기타지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7년: 재해대책기금 도입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1998년: 재난관리기금 도입 (「재난관리법」 개정)
- 2004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통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 2005년 ~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83	720	534	186	1,969	807	841	-34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최근 3년간 지자체 보통세 결산액의 1%(최저적립액)를 적립하여 재원을 조성
- 일반회계를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각종 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속 존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 2024년도 재난예방 사업을 위해 총 1,070백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복구(358백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10백만원), 중장비 임차료(14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16백만원), 재난 관리장비 유지관리(28백만원), 등 총 534백만원을 지출하여 각종 재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사업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6	277	34	1,070	534	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복구 등 중장비 임차(74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20백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0백만원) ○재난관리 장비 유지관리 (12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5백만원) ○재난관리용품 (40백만원)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26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460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50백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10백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용역 (50백만원) ○스마트그늘막 등 구입·설치 (29백만원) ○방독면 구매 (10백만원) ○재난대응 장비 구매 (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복구 등 중장비 임차 (35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6백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백만원) ○재난관리 장비 유지관리 (14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0백만원) ○재난관리용품 (16백만원)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23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109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20백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9백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용역 (0백만원) ○스마트그늘막 등 구입·설치 (17백만원) ○방독면 구매 (10백만원) ○재난대응 장비 구매 (5백만원) 	34%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복구 등 중장비 임차(66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20백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0백만원) ○재난관리 장비 유지관리 (22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5백만원) ○재난관리용품 (41백만원) ○화재취약계층 소방용품 구매 (27백만원)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52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730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52백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10백만원) ○스마트그늘막 등 구입·설치 (26백만원) ○재난대응 장비 구매 (4백만원) ○인명구조함등 구매 (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복구 등 중장비 임차 (15백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7백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6백만원) ○재난관리 장비 유지관리 (28백만원) ○재난위험지역 경고판 설치 (4백만원) ○재난관리용품 (12백만원) ○화재취약계층 소방용품 구매 (22백만원)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43백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359백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10백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9백만원) ○스마트그늘막 등 구입·설치 (0백만원) ○재난대응 장비 구매 (2백만원) ○인명구조함등 구매 (8백만원) 	5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우려지 예방조치 및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재난 및 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난관리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감천1동 유진타워 배면도로 항구복구 공사 - 재난 응급복구 중장비임차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 방재 자재 구입 ○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등 	<p style="text-align: center;">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대비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기여하는 등 각종 자연·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으로 설치 목적 달성
-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15%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최저 적립액 규모 이상으로 기금 잔액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5%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841백만원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40,800,000원	3중시설물 실태조사 점검분야 확대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11,900,000원	일상적인 안전점검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로 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 운용 중임
-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69백만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64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법정 의무예치금을 활용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긴급한 재난에 대응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1,572	100%	2,060	100%	2,503	100%
	전입금	618	39.3%	653	31.7%	708	28.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33	59.4%	1,326	64.4%	1,783	71.3%
	예수금						
	이자수입	21	1.3%	80	3.9%	12	0.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572	100%	2,060	100%	2,503	100%
	비용자성사업비	246	15.7%	277	13.4%	535	21.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26	84.3%	1,783	86.6%	1,968	78.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설치연도 : 2009년
- 설치목적 : 옥외광고물등의 경관 개선,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17	16	134	△118	299	57	77	△2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재해위험간판 27개 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25개소 설치·보수,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 설치, 주민자율게시판 7개소 설치·보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62개 설치,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함
-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커 사업 규모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옥외광고물등 정비 및 개선 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옥외광고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원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7	102	87	177	134	7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대비 현수막 탈부착 등 사무관리비(15백만원)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12백만원) ○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 수거 보상제(15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민 자율게시판 설치·유지보수(45백만원) ○ 재해위험간판 철거(9백만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18백만원) ○ 천공기 등 자산취득비(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대비 현수막 탈부착 등 사무관리비(3백만원)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9백만원) ○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 수거 보상제(15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민 자율게시판 설치·유지보수(45백만원) ○ 재해위험간판 철거(9백만원, 48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18백만원, 85개) ○ 천공기 등 자산취득비(3백만원) 	87%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현수막 처리 등 사무관리비(11백만원)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13백만원) ○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 수거 보상제(15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민 자율게시판 설치·유지보수(60백만원) ○ 재해위험간판 철거(10백만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18백만원)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현수막 처리 등 사무관리비(9백만원) ○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8백만원) ○ 불법대부업 명함형전단지 수거 보상제(15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민 자율게시판 설치·유지보수(32백만원) ○ 재해위험간판 철거(9백만원, 27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18백만원, 162개)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43백만원) 	7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였고, 재해위험간판 철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대 및 주민자율게시판 설치·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경관 개선 ○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현수막자랑게시대 설치 및 보수 ○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및 보수 ○ 재해위험간판 철거사업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옥외광고물등의 경관 개선,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추진, 광고물등의 정비 및 안전관리 추진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정상적 경비 비율 5% 이상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삭감 등 세출부문의 구조조정 필요	전년도 개선권고 조치계획 참고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옥외광고물 재해예방 장비 임차 및 태풍 대비 현수막 탈부착	3백만원	예측 불가능한 위험상황 시 신속한 대응 및 풍수해 대비	상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민자율게시판 설치·보수	42백만원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편의 제공	상
③ 재해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	10백만원	장기간 방치된 재해위험 및 주인없는 간판 정비로 주민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	상
합 계	6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재원은 옥외광고물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수료,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시군구로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음

- 현재 재원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용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시비의 지원도 증가추세이므로 사업 규모 조정과 재원 조성 노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맞추어 풍수해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존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796	100%	518	100%	433	100%
	전입금						
	보조금	10	1%			9	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71	46%	513	99%	416	96%
	예수금						
	이자수입	4	1%	5	1%	8	2%
	기타수입	411	52%				
지 출	합 계	796	100%	518	100%	433	100%
	비용자성사업비	192	24%	101	19%	134	3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90	11%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13	64%	416	80%	299	6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	1%	1	1%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0년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 도모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원활한 수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9	58	83	△25	224	41	76	△3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추진실적	비율
교육홍보사업	10	9	90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업소위생수준향상	61	56	9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6	5	83
기타	256	237	93

- 코로나 이후 청결과 위생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의식 변화로 안전한 외식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안심식당지원, 음식점 밀집지역, 소규모 업소 위주의 위생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한 식사 문화 개선 관련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배달·포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였음. 또한 배달 음식점·음식점 밀집지역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산에 기여하였고, 관내 20년 이상 노포맛집을 발굴, 홍보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향후 음식 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위생수준 및 국민 영양 수준 도달에 노력하고자 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과징금, 이자수입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존치가 꼭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1	73	90	95	83	8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 교육홍보사업(10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64백만원) ○ 식품위생감시원활동(7백만원)	○ 교육홍보사업(10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57백만원) ○ 식품위생감시원활동(6백만원)	90%
'24년	○ 교육홍보사업(10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79백만원) ○ 식품위생감시원활동(6백만원)	○ 교육홍보사업(9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69백만원) ○ 식품위생감시원활동(5백만원)	8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위생적으로 취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 남은음식 줄이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확산, 모범음식점 지원, 노포맛집 지정 및 홍보,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99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향상도모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원활한 수행	○ 위생등급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홍보 ○ 위생·청결 향상을 위한 각종 물품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선진 위생 문화 지원을 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식품업소 위생 수준 향상	48백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 필요	상
② 음식문화개선 및 표준영업정착사업	40백만원	국민 식생활 관리, 음식의 관 광자원화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을 위해 지속적 실시 필요	상
③ 모범음식점 지원	7백만원	식품위생법 제 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모범음식점 지 정 및 운영관리 지침	상
합 계	9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친절·청결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식품 위생 교육·홍보 사업에 사용되므로 재원 조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선진위생문화 지원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기금 조성은 필수적이며, 향후 영업소의 자율 실천 및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유도과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위생교육 등 기타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347	100%	323	100%	308	100%
	전입금						
	보조금	22	6%	21	6%	29	9%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13	90%	277	86%	249	81%
	예수금						
	이자수입	3	1%	6	2%	12	4%
	기타수입	9	3%	19	6%	18	6%
지 출	합 계	347	100%	323	100%	308	100%
	비용자성사업비	70	20%	73	23%	83	2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77	80%	249	77%	225	7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	0%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 설치연도 : 200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18	220	38	182	3,600	355	213	142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은 2005년에 설치되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자활근로사업 발생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또한 가족행복과 주민참여단과 일자리정책과 사하청년네트워크와의 협업으로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활사업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
- 다만 2024년도 편성된 예산 중 자활사업단 샐러드와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매출액 증가율 정도 부족, 창업 희망 참여자의 의사 변경 등으로 미집행함

- 기금 조성액 대비 세출규모(비중)가 낮은점을 감안하여 매년 자활 기금 예산 편성 시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세출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조성액 총액의 5%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7	51	47.1	91	38	41.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3백만원) ○ 자활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7백만원) ○ 자활기업 방역 및 홍보 지원사업(7백만원) ○ 자활기업시설보강및장바구니비등지원(30백만원) ○ 자활기업 전세점포 용지(50백만원) ○ 자활성공수당(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29백만원) ○ 자활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5.7백만원) ○ 자활기업 방역 및 홍보 지원사업(6.6백만원) ○ 자활기업시설보강및장바구니비등지원(29.7백만원) ○ 자활기업 전세점포 용지(0백만원) ○ 자활성공수당(5.5백만원) 	47.1%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9백만원) ○ 자활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7백만원) ○ 자활기업 방역 및 홍보 지원사업(15백만원) ○ 자활기업 전세점포 용지(50백만원) ○ 자활성공수당(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8.9백만원) ○ 자활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5.4백만원) ○ 자활기업 방역 및 홍보 지원사업(14.8백만원) ○ 자활기업 전세점포 용지(0백만원) ○ 자활성공수당(8.5백만원) 	41.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활성공수당 지원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율 향상에 기여
- 주민참여를 통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모니터링(미스터리 쇼퍼방식) 및 피드백으로 자활참여자의 시장적응력 강화
- 자활기업 방역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 자활사업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 ○ 자활사업 연구 등을 위한 비용 등	상	

○ 자활기금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자활사업의 지역적 특성 및 운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금사업	213백만원	자활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원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수익금 반납액 등으로 기금목적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의 수입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자활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므로 자활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999	100%	1,168	100%	1,338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9	5%	43	4%	52	4%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15	81%	948	81%	1,118	84%
	예수금						
	이자수입	109	11%	150	13%	153	11%
	기타수입	26	3%	27	2%	15	1%
지 출	합 계	999	100%	1,168	100%	1,338	100%
	비용자성사업비	51	5%	50	4%	37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48	95%	1,118	96%	1,301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96년
- 설치근거 :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47	27	14	13	560	30	14	16	'25. 7. 1. 기금폐지

II.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운영,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복지증진 사업 및 행사 지원 등을 위해 1996년 조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금 설치 및 조성 목적에 부합하였음

※ 2023년 기금 운용계획의 목적 사업비: 4백만원

- 2025. 7. 1. 노인복지기금 폐지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당초 기금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2026년 본예산에 기금 목적사업 예산을 편성해 노인복지 증진 사업 및 행사를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	3	75	14	1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2백만원, 100시간) ○ 노인의 날 행사지원 (1백만원, 50명) ○ 어버이날 행사지원 (1백만원,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2백만원, 100시간) ○ 노인의 날 행사지원 (1백만원, 35명) 	75%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2백만원, 100시간) ○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백만원, 50명) ○ 노인생활 체육대회 지원 (4백만원, 250명) ○ 경로당 회장단 역량강화 지원 (6.3백만원, 42명) ○ 게이트볼·파크골프대회 지원 (1.1백만원, 4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 (2백만원, 100시간) ○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백만원, 50명) ○ 노인생활 체육대회 지원 (4백만원, 250명) ○ 경로당 회장단 역량강화 지원 (6.3백만원, 42명) ○ 게이트볼·파크골프대회 지원 (1.1백만원, 45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육성	경로당 프로그램 및 노인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	노인복지시책 추진 ▷ 상 경로당 관련 지원 ▷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육성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2025. 7. 1. 노인복지기금 폐지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은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적정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25. 7. 1. 노인복지기금 폐지 조례 공포 및 시행

- 조성 잔액 전액 세외수입(그외수입) 조치 완료

- ▶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 시, 당초 기금 목적사업 일반회계 예산 편성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325	100%	350	100%	374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10	95%	324	92%	347	93%
	예수금						
	이자수입	15	4%	26	7%	27	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25	100%	350	100%	374	100%
	비용자성사업비	1	1%	3	1%	14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24	99%	347	99%	360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시행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5	15	7	8	333	17	8	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 설치되어 기금 조성액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출산장려 시책사업(돌상·백일상 대여사업)은 무상대여 범위를 생일상 지원까지 확대 운영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The 안심네트워크 구축-사하드림로 조성사업을 통해 빛드림 우편함 13개, 반사경 1대를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안심 귀갓길 보행환경이 제공됨.
- 지역사회와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단체 회원들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1	5.6	92	7	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출산장려 시책사업(3백만원) ○사하마더오케스트라 운영(0.9백만원) ○여성안심화장실 조성(1백만원) ○지역여성리더 강화교육(1.2백만원)	○출산장려 시책사업(2.9백만원) ○사하마더오케스트라 운영(0.48백만원) ○여성안심화장실 조성(1백만원) ○지역여성리더 강화교육(1.2백만원)	92%
'24년	○출산장려 시책사업(3백만원) ○The 안심네트워크 구축(3백만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1.2백만원)	○출산장려 시책사업(3백만원) ○The 안심네트워크 구축(2.9백만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1.2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돌상·백일상 대여사업을 통해 출산 장려 및 양육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The 안심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안전 체감도 향상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 수행, 소통·공감 능력 향상 기여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사업 추진	양성평등 정책사업 여성 권익증진 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 리더십 향상 등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출산장려 시책사업	2백만원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상
②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1.5백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상
③ The 안심네트워크 구축	5백만원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사하 환경 조성	상
합 계	8.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적립기금액의 이자수입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수입 규모에 영향이 있으나 기금 조성액 가용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양성평등 관련 정책사업 및 여성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원 조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이자수입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금 조성액 보존(유지)을 위해서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을 장기간·고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여성의 권익 증진,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117	100%	130	100%	140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6	91%	115	88%	125	89%
	예수금						
	이자수입	11	9%	16	12%	15	1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7	100%	130	100%	140	100%
	비용자성사업비	2	2%	6	4%	7	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5	98%	125	96%	133	9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설치연도 : 202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1	124	27	97	158	101	124	△23	

II. 분석결과

1. 총 평

-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음
- 2024년 기부 모금액을 통해 '24년 말 기준 158백만원 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배의 모금액을 달성함
- 2025년도에는 82백만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경제성 지능 장애 아동 지원 사업 등 5개의 기금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며,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계속 존치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27	2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4년	○ 답례품제공(26백만원) ○ 고향사랑기금사업 공모 시상(1백만원)	○ 답례품제공(26.3백만원) ○ 고향사랑기금사업 공모 시상(0.5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향사랑기부제를 최초 시행하여 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적절히 기금을 조성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부금을 통해 124백만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8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성 지능장애아동 지원 사업 등 5개의 기금사업 예산 편성 ○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및 답례품 제공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 ○ 편성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항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조 성 액 : 158백만원('24년 12월말 기준)
- 조성재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경계성 지능 장애 아동 지원, 취약계층 연탄보일러 교체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추후 꾸준히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므로 고향사랑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61 / 100%	185.4 /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1 / 33%
	예수금			
	이자수입			0.4 / 0.2%
	기타수입		61 / 100%	124 / 66.8%
지 출	합 계		61 / 100%	185.4 / 100%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6.8 / 14.5%
	예탁금			
	예치금		61 / 100%	158.6 / 85.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인적자원 개발
- 설치년도 : 200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4	170	185	△15	39	170	195	△25	

II. 분석결과

1. 총 평

-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은 사하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 시 금융기관이 구정 발전을 위해 제안한 출연금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생활체육 지원,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 설치되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24년에는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및 성인문해학습자 체험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을숙도 문화회관 기획전시, 어린이 오페라축제, 감천문화마을 문화공연 개최 및 다대포 해변 가요제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해소시켜 주었고,

- 또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사업과 노후화된 체육시설(을숙도 체육 시설, 동네체육시설 등) 및 갈맷길을 정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9	160	80	198	182	9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및 행복여성 아카데미(25백만원) ○ 명사와 함께하는 북콘서트(10백만원) ○ 을숙도문화회관 기획전시 및 공연 감천문화마을 문화공연(46백만원) ○ 다대포 해변가요제 지원(13백만원) ○ 생활체육행사 지원(2백만원) ○ 생활체육시설 정비(92백만원) ○ 체육진흥활동 지원(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10백만원) ○ 명사와 함께하는 북콘서트(9.8백만원) ○ 을숙도문화회관 기획전시 및 공연 감천문화마을 문화공연(44.6백만원) ○ 다대포 해변가요제 지원(13백만원) ○ 생활체육시설 정비(71.6백만원) ○ 체육진흥활동 지원(11백만원) 	80%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10백만원) ○ 성인문해학습자 체험학습(15백만원) ○ 명사와 함께하는 북콘서트(10백만원) ○ 을숙도문화회관 기획전시(10백만원) ○ 을숙도문화회관 공연(18백만원) ○ 감천문화마을 문화공연(18백만원) ○ 다대포 해변가요제 지원(13백만원) ○ 생활체육행사 지원(2백만원) ○ 체육진흥활동 지원(15백만원) ○ 생활체육시설 정비(8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10백만원) ○ 성인문해학습자 체험학습(15백만원) ○ 명사와 함께하는 북콘서트(10백만원) ○ 을숙도문화회관 기획전시(10백만원) ○ 을숙도문화회관 공연(17백만원) ○ 감천문화마을 문화공연(18백만원) ○ 다대포 해변가요제 지원(13백만원) ○ 체육진흥활동 지원(15백만원) ○ 생활체육시설 정비(74백만원) 	9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우니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및 성인문해학습자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다대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고품격 북콘서트 개최를 지원하여 주민의 문화예술적 욕구 해소 및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으로 인적자원개발에 기여
-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 휴식 공간인 을숙도 문화회관과 감천 문화 마을에서 구민들이 문화공연, 기획전시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 확대
-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동네 체육시설 및 각종 체육시설을 보수·확충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
- 다만, 생활체육행사 지원의 경우 부산시 행사와 연계 개최됨에 따라 계획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문화예술개최지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생활체육 지원,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59백만원	○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증 및 기금의 신축적 집행	상
② 생활체육 지원사업	102백만원	○ 체육 관련 예산의 보강으로 사업수행의 안전성 확보	상
③ 인적자원 개발사업	35백만원	○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 확보로 능력향상 기회 확보	상
합 계	19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의 재원은 사하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 시 금융기관이 구정발전을 위해 제안한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4년간 총 680백만원을 출연받았으며, 재원 조성이 안정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안정적인 재원마련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기금이 존치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228	100%	214	100%	225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7	25%	43	20%	54	24%
	예수금						
	이자수입	1	0.4%	1	0.6%	1	0.4%
	기타수입	170	74.6%	170	79.4%	170	75.6%
지 출	합 계	228	100%	214	100%	212	100%
	비용자성사업비	185	81%	160	75%	185	8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3	19%	51	25%	27	1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다음연도 이월액(사고이월) : 13백만원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사하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기금 확보
- 설치연도 : 200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98	5,534	1,691	3,843	4,241	116	1,225	△1,109	

II. 분석결과

1. 총 평

- 청사건립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에 따라 사하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02. 12. 26.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였음
- 신청사 부지매입 이후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2013년 1억원, 2017년 2억원 기금예산 편성), 정부의 신청사 건립유보 및 리모델링 확산 방침에 따라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하였으나
- 현 청사의 건립년도가 1978년도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청사건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미래 신청사 건립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3년도			'2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1,765	1,691	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24년	구분청 부설주차장 확충 - 부지매입비 1,64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비 15백만원 - 공사비 68백만원	구분청 부설주차장 확충 - 부지매입 완료 1,64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시행(토목·전기) 15백만원 - 공사(토목·전기·통신) 36백만원*	96%

* 시기미도래로 나머지 공사 '25년도에 이월하여 진행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구분청 부설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 마련	○ 부지매입비 ○ 청사 건축비 ○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8년 신청사 건립예정부지 16,700㎡ 매입완료(130억원)
- 2024년 구본청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및 확충 완료(16억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	1,225백만원	신청사 건립 부지취득비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매년 기금 조성이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의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했으나 2015. 7. 10. 조례 일부 개정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나, 구 재정여건과 신청사 건립 유보로 2009년부터 순수 이자수입만 유지하다가 2013년도 1억원, 2017년도 2억원, 2024년도 55억원의 기금 재원을 확보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 청사의 본관 건물은 1978년도에 건립되었고 조립식 판넬 등으로 증축된 부분이 많아 매우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많으므로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하고, 동별 행정복지센터 또한 노후되어 단계적 건립이 필요하여,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는 하나 반드시 매년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수 입	합 계	36	100 %	56	100 %	5,590	100 %
	전입금					5,500	98.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	58.3%	36	64.3%	56	1%
	예수금						
	이자수입	15	41.7%	20	35.7%	34	0.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6	100 %	56	100 %	5,540	100%
	비용자성사업비					1,691	3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6	100%	56	100%	3,849	6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다음연도 이월액(사고이월) : 50백만원